

**포상금 지급 기준**(제75조제4항 관련)

| 신고인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급기준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징수금의 금액         | 포상금의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요양기관 관련자<br>가. 요양기관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의사, 약사, 간호사, 의료기사 및 그 밖의 직원 등이 그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<br>나. 약제·치료재료의 제조업자·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요양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|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| 징수금 $\times$ 30/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| 300만원 + [(징수금 - 1천만원) $\times$ 20/100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천만원 초과         | 1,100만원 + (5천만원 초과 징수금 $\times$ 10/100)<br>다만,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. |
| 2. 요양기관 이용자<br>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,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진료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요양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천원 이상 2만5천원 이하 | 1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만5천원 초과        | 징수금 $\times$ 40/100<br>다만, 5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.                   |
| 3. 그 밖의 신고인<br>제1호와 제2호의 사람 외의 사람이 요양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| 징수금 $\times$ 20/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| 200만원 + (1천만원 초과 징수금 $\times$ 15/10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천만원 초과         | 500만원의 범위에서 350만원 + (2천만원 초과 징수금 $\times$ 10/100)                       |

비고

1. "징수금"이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

용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.

2. 위 표의 징수금의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.

3. 위 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된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1천원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.